

형사사건의 수사보도에서 피의자를 직접 취재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사의 작성에
과실이 있다. 따라서 진실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손해 배상청구사건

동경지방법원 소화 56 년(1981 년)(ㄱ) 제 14745 호, 1987.3.26. 판결.
동경고등법원 소화 62 년(ㄴ) 제 912 호, 제 921 호, 제 1888 호, 제 1889 호, 1988.5. 18.
판결.

사건개요

주니치신문사 발행의 동경신문은 소화 55 년(1980 년) 9 월 25 일자와 동년 10 월 7 일자
조간에 『공포의 노인홈』 『귀신 료모 용서말라』 (료모는 기숙사나 양로원 같은
복지시설에서 기숙자들을 돌보아주는 여자를 뜻하며 이 글에서는 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편집자주) 등 제하의 기사에서 동경의 사회복지법인 Y 회 노인홈의 료모 K 가
기숙자들로부터의 기부금과 건강진단료의 일부를 횡령, 은행예금을 사취하여 피소되었고
또한 기숙자에 대해 폭력을 휘둘러 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기숙자의 투서를
근거로 Y 회 원장, 경찰서장등 관계자들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보도했다. 중앙공론사에서
출판하는 「부인공론」도 동년 12 월 12 일 특대호에 동경신문의 기사내용을 근거로 작가
N 이 취재·집필한 『다큐멘트 폭력료모에 제압된 노인홈』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동경신문이나 「부인공론」 모두 료모의 실명은 보도하지 않고 익명으로 보도했으나 K 는,
기사 속의 「당해 료모는 Y 회 최고참」 등으로 자신을 지목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정령,
폭력 등의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어 명예와 신용을 현저하게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주니치신문사, 중앙공론사, Y 회와 동회의 원장 및 작가 N 을 상대로 모두
4 백만엔(,3 천 6 백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불과 사죄 광고 게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다.

동경신문 기사를 집필한 『기자 및 작가 N 은 취재경위를 상세하게 증언하면서 기사의
진실성, 진실이라고 믿은 이유의 상당성의 입증에 최선을 다했으나 1 · 2 심 판결은 다같이
기사의 공공성, 공익성을 인정하면서도 진실성, 상당성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 피고에 대해 위자료와 지불을 명했다. 그러나 원고의 사죄광고
게재청구는 기각했다.

1 심의 동경지방법원 판결은 위자료로 Y 회, 원장, 주니치신문사에 각각 1 백만엔(9 맥만원
상당),

Y 회, 원장, 중앙공론사, 작가 N 에게 각각 1 백만엔의 지불을 명했으나 주니치신문사,
중앙공론사, N 은 항소, 2 심의 동경고등법원 판결은 1 심의 위자료를 감액하여
주니치신문사에 50 만엔(4 백 5 십만원 상당), 중앙공론사와 작가 N 에게 각각 50 만 엔의
지불을 명령하여 확정시켰다.

1·2심 모두 진실성 또는 상당성의 존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소사건의 피의자인 원고 K로부터는 취재를 하지 않고 노를 고발한 원장측과 경찰에서의 취재만을 근거하고 있음을 중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취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사의 작성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았으며 적절하지 못한 기사를 집필, 게재한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경신문의 『공포의 노인홈』이라는 첫번째의 기사는 K의 행위에 대해 「지불한 기부금 6D 만엔(5백 4십만원 상당) 가운데 20 만엔(1백 8십만원 상당)을 K가 횡령」, 「A가 같은 모양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적어도 5명 이상의 새로 들어온 사람으로부터 기부금 합계 60 만엔(5백 4십만원 상당) 이 상을 횡령…」, 「기숙할 때 무료인 건강진단에 대해서도 '한 사람이 3 만엔(27만원 상당)을 부담한다'고 기숙자를 속여…」, 「나이 많은 노인이 조금이라도 항의하려고 하면 '나가 있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협…」 등으로 기술했다. 두번째의 『귀신 료모 용서말라』라는 기사는 「료모의 한 사람이…」라고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횡령의 혐의와 폭력행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부인공론」의 다큐먼트는 『이렇게 무참한 일이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의탁할 곳이 없는 노인들이 복지시설의 직원에게 계속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부제목을 붙여 Y 회에 근무하는 「K라는 료모」에 대해 동경신문의 보도와 똑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르포 형식으로 보도, 그 속에서 K의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노인홈 근처의 우아한 맨션에 살고 있으며 자가용도 갖고 있다고 의혹을 던져주고 있다.

1심에서 K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 했다.

① 기사는 모두 익명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K를 표시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② 금전을 횡령했거나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 ③ 원장은 신문, 잡지의 취재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한 채 기사에 쓰여진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해 허위기사의 작성에 협력했다. ④ 기사는 모두 고의적이며 모욕적이고, 멸시적인 언사를 구사하였으며 극히 단정적인 표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를 비열하고 험악한 범인으로 몰고 있다. 이 때문에 원고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변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실직당했다. ⑤ 원장은 경리주임 T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부금, 건강진단료를 횡령한 것으로 믿고 Y 회로 하여금 K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또 2심에서는 ① 횡령을 둘러싼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라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K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동경신문 『기자의 취재는 원장만을 상대로 했으며 동경신문, F 기자, 원장을 취재원으로 했다고 하는 N에 대해서도 원장만을 상대로 한 취재하는데 귀착된다. ③ 원장은 K에 대한 고소절차를 취한 인물로서 K와는 대립적 입장에 있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논점을 주장에 덧붙였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주니치신문사, 중앙공론사는 항변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① 기사의 목적은 K의 범죄추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러한 행위를 방임하고 있는 공익단체의 관리책임을 물어 전국의 복지시설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② 기사내용은 몇 통의 투서, Y 회의 원장, T 경찰서장 등 관계자로부터의 취재, 여러 가지

종류의 문서등의 조회에 근거 한 것으로 주요부분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③ 기자가 원고 K 나 T 경리주임, 피해노인의 취재를 자제한 것은 직접취재를 하면 동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한 원장에 의해 거절당했기 때문인데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그 밖의 취재로 화신을 가졌다. ④ 횡령사건이 혐의불충분으로 불기소 된 것은 K 에게 부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다. ⑤ 원장과 최고참 료모인 K 가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라는 것을 간파하는 일은 취재시점에서는 불가능했다. ⑥ 의식적으로 취재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데 대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재에 결여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필요하고도 가능한 취재 가 결여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⑦ 기사는 Y 회 노인홈의 최고책임자이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인 원장과 면접, K 등을 형사고소한 사실등에서 확인한 것으로 진실이라고 생각된다. 설령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판결내용

1 심 판결은 우선 동경신문, 「부인공권」의 기사는 모두 원고 K 에 대해 가명을 쓰고 있으나 기술된 연령, 주소, 특징에 의해 K 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K 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주지할 수 있어 각 기사의 제목이나 기사내용의 단정적 표현에 의해 K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 했으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위법성 조각에 관한 판단에 들어가 공공성, 공익목적 모두 인정했으나 진실성 또는 상당성에 관한 피고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물리쳤다.

① T 경리주임의 증언은 극히 애매하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회계내용은 틀린 곳이 많이 보여 T 가 기부금, 건강진단료의 일정금액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Y 회는 횡령, 편취로 K 를 T 경찰서에 고소했으나 동사건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되어 K 의 횡령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② 은행예금편취의 사실도 노인홈의 종업원이 사례로 수령했다고 하는 K 의 주장도 갑작스레 부정할 수 없다. ③ 폭력행위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 익명투서의 기재를 가지고 그대로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④ 이상 각 기사의 근간을 이루고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⑤ 원장은 T 경리주임이나 일부 노인들의 고발을 쉽게 믿어 K 를 범인으로 단정, 취재기자에게 말한 것으로 그 행위에는 적지않은 과실이 있다. ⑥ 동경신문 기자는 K 에 대해 취재를 하지 않고 있는데 형사사건의 수사보도에서는 가능한 한 피의자 취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소인의 말이나 비공식적인 경찰취재만으로 된 기사작성에는 과실이 있다.

원장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취재를 보류했다는 것도 과실을 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⑦ 작가 N 의 취재 활동은 동경신문 F 기자와 원장만으로 한정되어 충분한 입증취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구체적이고도 단정적으로 쓰고 있어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모두에게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 각각 1 백만 엔(9 백만원 상당)의 위자료지불을 명했다.

2심 판결은 각 기사의 진실성의 유무에 대해 다시 검토한 결과 ① 은행예금의 편취에 대해 K가 의심을 받고 Y 회로부터 고소당한 것은 하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등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기부금, 건강진단료의 일부가 어떤 자의 손에 들어갔다고 생각된다. K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나 명확하게 허위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각 기사 내용 중에는 그 밖의 노인들로부터 기숙비의 이중징수 등 몇 가지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정확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② 폭력행위,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K의 언동 가운데 문제 행동이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는 것 등을 지적, 각 기사 내용가운데 근간을 이루는 K의 행위를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판결은 동경신문이 횡령 등 K의 범죄혐의 사실의 공표와 관련하여 K의 항변을 듣는 자세를 갖지 않은데 대해 다음과 같이 준엄하게 지탄하고 있다.

「피고소인의 항변은 통상 전면 부민이어서 그것의 취재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피의자의 항변을 들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는 취지의 내용을 덧붙이면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피의자의 항변을 들음으로써 지금까지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해 피의사실의 관점을 재검토하여, 기사내용이나 보도의 시비, 시기 등에 대해 다시 고칠 것이 요구되어지는 일도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이를 소홀히 해 피의사실의 보도를 서두른 나머지 피의자의 명예,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K의 손해에 대해서는, K의 언동에도 반성할만 한 점이 있었고 동경신문이나 중앙공론사의 과실의 정도가 적었다는 점, K는 실직했으나 통상적인 해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각각 50만 엔(45만원 상당)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죄광고의 게재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청구를 기각했다.

동경지방법원 판결이유 발췌

본 건에 있어서 피고 주니치신문사는 별로 신속성이 요구된다고 생각되지 않는 본 건 사안에 대해, 신병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용이하게 취재가 가능한 원고에 대해 어떠한 취재활동도 행하지 않고 전술과 같은 자극적이 제목아래 단정적인 표현을 쓴 본 건 기사를 집필, 게재한 것이므로 다른 나머지 점에 대해 판단할 것도 없이 피고 주니치신문사의 본건 기사작성에 있어 과실이 있으며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동경지방법원 재판관 奥山與悦, 동경고등법원 재판관 森綱郎)